



사 단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범 인 **대한병원협회**

수 신 전국 병원(의료원)장

참 조

제 목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853(2015.9.25.)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치료식 영양관리료」 항목이 신설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160호, '15.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3.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교통사고 환자(자동차보험)에게 치료식(열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

나. 그 외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 영양사 인력 산정기준 및 현황통보 기준은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다.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끝.

대한병원협회장



대리 김수한 팀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

시행 : 보험 제 2015-470 (2015.09.30)

우 121-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마포동 35-1)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 홈페이지 : www.kha.or.kr

전화 02-705-9254 전송 02-705-9259 (대표FAX : 02-705-9209) E-mail : kimsh@kha.or.kr